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한 구미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고
-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시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시민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기능을 개선하고자 실국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객중심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

- 「경제통상국」을 선임국으로 조정 기업하기좋은도시 위상제고
- 「홍보담당관」신설 도시홍보 및 마케팅 기능강화
- 「체육진흥과」신설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조
- 「도로과」, 「도시디자인과」신설 도시기능향상 및 경쟁력 강화

나.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기능 개선

○ 본 청

• 명칭변경

- 기획정보실 → 「정책기획실」
- 행정지원국 → 「자치행정국」
- 지 적 과 → 「부동산관리과」
- 혁신정책담당관 → 「정책혁신담당관」

- 문화공보담당관 → 「문화예술담당관」
- 생활위생과 → 「청소행정과」
- 환경보호과 → 「환경위생과」
- 허가민원과 → 「시민만족과」
- 폐 지 : 재난안전과
- 출 장 소
 - 명칭변경 : 산림과 → 「산림경영과」
- 직속기관
 - 명칭변경
 - 구미보건소 지역보건과 → 「보건행정과」
 - 건강관리과 → 「건강증진과」
 -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→ 「농촌지원과」
 - 기술보급과 → 「기술개발과」
- 사 업 소
 - 명칭변경
 - 시민복지회관 → 「평생교육원」
 - 시민복지회관 관리과 → 「지원관리과」
 - 사회교육과 → 「평생교육과」
 - 폐 지 : 체육시설관리사무소, 환경시설관리사무소

다. 국별 분장사무 조정

- 부동산 및 지적관련 업무 : 건설도시국 → 경제통상국
- 민방위조직 및 육성업무 : 건설도시국 → 자치행정국
- 균형발전 관련업무 : 경제통상국 → 자치행정국
-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운영관리업무 → 자치행정국
-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설치 및 운영관리업무
→ 주민생활지원국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 등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
- 경상북도 정책기획관-213('07.1.5)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
통보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근거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코자
-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부서의 신설과 폐지,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전체 기구 수는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하되
 - 본청 1과, 사업소 1단 2사업소를 폐지하고, 본청에 4개과를 신설하면서 기구명칭 일부를 변경하였음
- 조직기능 강화 및 과 신설·폐지는
 -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을 본청 선임국으로 조정하고
 - 본청에 「홍보담당관, 체육진흥과, 도로과, 도시디자인과」 등 4개과를 신설하였으며

-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기능은 건설과로, 민방위기능은 새마을과로 이관하였고,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을 문화예술담당관실의 담당으로,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진흥과 담당으로,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청소행정과 담당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1과 1단 2사업소를 폐지하였음,
- 부서 명칭변경은
 - 2국 1원 13개 담당관·과를 조정 하였음
 - 본청의 기획정보실을 정책기획실로,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,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,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정책혁신담당관실로,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예술담당관실로, 생활위생과를 청소행정과로,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, 허가민원과를 시민만족과로 변경하였고,
 - 출장소의 산림과를 산림경영과로 변경하였으며,
 - 직속기관인 구미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,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,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개발과로 변경하였고,
 - 사업소인 시민복지회관을 평생교육원으로, 관리과를 지원관리과로, 사회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변경하였음.
- 국별 분장사무 조정 내역은
 - 부동산 및 지적관련 업무를 「건설도시국」에서 「경제통상국」으로
 - 민방위조직 및 육성업무를 「건설도시국」에서 「자치행정국」으로
 - 균형발전 관련업무를 「경제통상국」에서 「자치행정국」으로
 -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운영관리업무를 「자치행정국」으로
 -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「주민생활지원국」으로 하였음

- 부칙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은

- 본 개정 조례안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명칭이 바뀐 경우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4조를 추가하였음

-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

- 이번 개편안은 구미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부서단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으로 의견제시된 사항들이 반영되면서
- 신설, 폐지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부서간 유사기능이 중복되었는지 여부와 부서명칭은 업무기능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저촉사항은 없음